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(정찬민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6856

발의연월일: 2020. 12. 23.

발 의 자:정찬민·성일종·곽상도

김선교 • 배준영 • 백종헌

지성호 · 김희곤 · 한무경

허은아 · 박대수 의원

(119]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서는 의결정족수를 '초과'하는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된 때 임시이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, 실제로는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됨에 따른 잔여 이사가 이사회 의결정족수에 미달하여 이사회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때 임시이사의 선임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임시이사 제도 취지에 더욱 부합함.

이에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함에 따른 임시이사 선임 요건을 이사회의의 의결정족수를 충족할 수 없어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때로 정비하여의결정족수에 해당하는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된 경우에도 임시이사가 선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25조제1항제2호 단서).

법률 제 호

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

사립학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5조제1항제2호 단서 중 "제18조제1항에 따른 이사회 의결정족수를 초과하는 이사에 대하여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한"을 "임원 취임 승인 이 취소되어 제18조제1항에 따른 이사회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는"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임시이사 선임에 관한 적용례) 제25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
이 법 시행 이후 임원취임 승인이 취소된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
| 제25조(임시이사의 선임) ① 관할 | 제25조(임시이사의 선임) ① |
| 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| |
| 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해관 | |
| 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 | |
| 권으로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| |
| 거쳐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| |
| 한다. | . |
| 1. (생 략) | 1. (현행과 같음) |
| 2. 제20조의2에 따라 학교법인 | 2 |
| 의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한 | |
| 경우. 다만, <u>제18조제1항에</u> | <u>임원취임 승인</u> |
| 따른 이사회 의결정족수를 | 이 취소되어 제18조제1항에 |
| 초과하는 이사에 대하여 임 | 따른 이사회 의결정족수를 충 |
| 원 취임 승인을 취소한 경우 | <u> 족하지 못하는</u> |
| 로 한정한다. | |
| 3. (생 략) | 3. (현행과 같음) |
| ② ~ ⑥ (생 략) | ② ~ ⑥ (현행과 같음) |